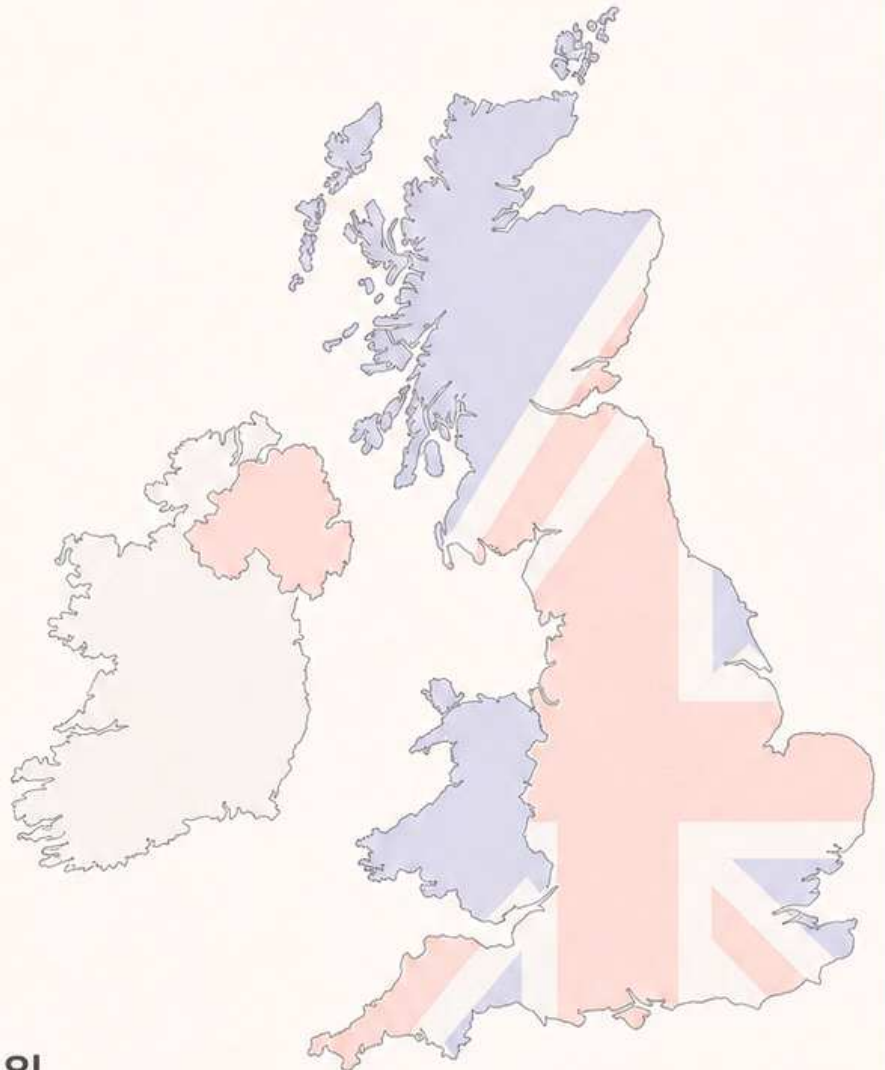


한국어 번역본

영국 「2023 조달법」

Procurement Act 2023



한국조달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ROCUREMENT

영국의 「2023 조달법」을 번역하면서

영국에서 공공조달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로는 최초로 2023년 10월, 「2023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이 제정되었다.

종전에는 EU 회원국으로서 공공 조달 분야에서 EU조달지침을 확일적으로 따라야만 했다. EU조달지침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행정입법인 「공공계약규정」, 「공익사업 계약 규정」 등을 제정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다양한 조달유형에 따라 350개 이상의 조달규정이 혼재하는 상태로 공공조달을 규율해 왔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EU체제하의 확일적, 비탄력적 조달제도를 탈피하고, 보다 유연하고, 단순하며 투명한, 그리고 영국 상황에 맞는 독자적 조달제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요구가 법 제정의 동기가 되었다.

조달법은 “유연성, 투명성, 공익가치”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먼저, ‘경쟁적 유연 절차’ 도입이다. EU 조달지침과 이를 토대로 제정된 국내 입법은 확일화된 입찰·계약 방식이 불가피했지만, 이번 조달법을 통해 사업의 특성에 맞춰 입찰절차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둘째, 조달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입찰의 시작과 끝인 입찰공고, 낙찰공고가 전부였다면, 이제는 조달계획부터 종료 이후까지 조달계획 공고, 파이프라인 공고, 투명성 공고, 조달종료 공고, 계약 변경 공고, 대금 지급 준수 공고, 계약 종료 공고 등 공개의 범위가 전 조달 과정을 망라하고 있다.

셋째, 낙찰 기준도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종전 경제성이 강조되는 MEAT(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 기준은 경제성 외에 환경·사회적인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MAT(Most Advantageous Tender)로 진화하여 법적으로 공식화되었다.

넷째, 계약의 성과관리제도도 도입되었다. 500만 파운드 이상의 계약에는 3개 이상의 핵심 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계약상대자가 KPI를 달성했는지를 최소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였다.

다섯째, **공공조달시장 관리 기반**도 새롭게 도입되었다. **조달 조사**(Procurement investigation)를 신설해 내각사무처가 계약기관의 조달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권고를 발령하고 권고에 대한 ‘이행경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중앙정부(내각사무처)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전적으로 결정·관리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명부(Debarment List)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집중화된 관리 체계이다. 개별 계약기관이 사안별로 부실하게 처리함으로써 공공조달시장 관리에 허점을 노출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적 태도로 가장 강력한 중앙집중식 입찰·공급자 배제제도를 선택한 것이다.

그 밖에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이용 편익을 높이기 위한 **Light Touch 계약**이나 **사용자 선택 수의계약**, 유연성을 높인 **개방형 기본협약(Open Framework)**, **역동적 시장(Dynamic Market)** 등은 조달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경쟁적 유연 절차와 결합해 조달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높였다.

조달법 제정은 마치 복잡하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공공조달 규율 체계를 단순화한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산 조달을 기본으로 하는 **영국 공공조달에서 느슨해진 고삐를 중앙정부가 힘껏 당기겠다**는 의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번 「2023 조달법」 번역은 가급적 원문에 충실 하자는 의도가 많기도 했지만, 영국 조달제도에 대한 이해가 짧아 다소 법문이 매끄럽지 못한 것을 느낀다. 용어 번역도 적절했는가 그 의구심을 버릴 수 없었다. 20여 년 전 호기롭게 도전했던 「2004 EU 조달지침」 번역 작업을 할 때 느꼈던 한계를 되풀이한 아쉬움은 여전하다.

하지만, 영국 최초의 조달법이고 조금이나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가볍게 시작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기 바라며, 가급적 원문을 함께 보기를 권한다.

2026.8월

한국조달연구원 원장 이상윤

번역 관련 안내

□ 법률명 및 본문 조문 번역 표기

- 출처 : 「13개 언어권별 법령 번역지침 및 용어」 (2025.2월 법제처/한국법령정보원 발간)
- 법률명 및 본문 조문 표기 예시(위 지침에 따름)
 - 법률명 : (영국) Companies Act 2006 → 「2006 회사법(Companies Act 2006)」으로 번역 표기
 - 본문 조문체계
 - 위 지침의 “7 영어권 - 뉴질랜드, 미국, 미얀마, 스리랑카, 싱가포르, 영국, 인도,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파키스탄, 필리핀, 호주” 중 “6) 영국”에 따름(p 25)

6) 영국

구분	원문(영국)	번역문	인용 시
편	Part 1	제1편	제1편
장	Chapter 1	제1장	제1장
절	이탤릭체	이탤릭체	이탤릭체
관	-	-	-
조	1. / section 1	제1조	제1조
항	(1)	(1)	제(1)항
호	(a)	(a)	제(a)호
목	(i)	(i)	(i)목

□ 부속서 번역 표기 (역자가 임의로 정함)

- 부속서(Schedule, 우리나라 법령의 별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Schedule 1, 2 ... 방식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부속서 1’, ‘부속서 2’로 번역 표기함.
- 부속서 본문의 구성 및 번역 표기
 - 부속서의 본문 배열은 1, 2, 3...의 Paragraph → 차하위에는 (1), (2), (3)...의 subparagraph → 차차 하위는 (1), (2), (3) ... → (a), (b), (c)..., → (i), (ii), (ii i)... 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법의 본문 조문체계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Paragraph’는 외관이나 내용상 조문보다는 본문의 ‘항’에 유사하여 이를 ‘항’으로 번역하되 번역 표기는 법 본문의 ‘항’과는 달리, 인용 항의 숫자 앞뒤에 괄호가 없는 ‘제1항’, ‘제2항’과 같이 번역함

- 그 밖에 subparagraph 이하는 법 본문의 번역 인용인 ‘제(a)호, (i)목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법 조문 그대로 번역 표기하였다.

○ 부속서 및 부속서 본문의 번역 인용 예

예) [In Schedule 7B](#) to the 「○○○ Act 2026」 at the end of [paragraph 9\(8\)\(b\)\(vi\)](#) → 「2026 ○○○ 법」 [부속서 7B 제9항 \(8\)\(b\)\(vi\)](#)의 끝에

□ 주요 용어 번역(알파벳순)

※ 비교의 해당 조문은 용어가 조문 제목에 있을 경우에는 그 조문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조문 또는 각주가 삽입된 조문을 기재하였음

원문	번역	비고
Assessment methodology	평가방법론	제23조
Assessment summaries	평가요약서	제50조
Associated person	연관인	제26조
Associated tender document	관련 입찰서류	제21조
Award criteria	낙찰 기준	제23 조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영국표준협회」	제56조
Centralised procurement	중앙 집중식 조달	제83A조
Closed material procedure	비공개 자료 심리절차	제66조
Common Council of the City of London	시티 오브 런던평의회	제2조
Competitive selection process	경쟁적 선정 과정	제46조
Concession contract	양허계약	제8조
Conflicts of interest	이해 충돌	제5편
Connected Person	관계인	부속서 6
Contract details notice	계약 세부내역 공고	제53조
Contracting authority	계약기관	제2조
Corporate Officer of the House of Commons	하원 재산관리관	제29조
Corporate Officer of the House of Lords	상원 재산관리관	제29조
Covered procurement	적용대상 조달	제1조
Debarment list	입찰참가자격 제한명부	제62조
Devolved procurement	자치 조달	제91조
Devolved Welsh	웨일스 자치정부	제14조
Devolved Welsh authority	웨일스 자치기관	제14조
Devolved Scottish authority	스코틀랜드 자치기관	제2조
Direct award	수익계약	제3편 제3장
Economic operator	경제적 거래자	제83B조
Estimated value	추정가격	제4조
Excepted matters	제외사항	제112조
Excludable suppliers.	배제 가능한 공급자	제57조
Excluded supplier	배제되는 공급자	제57조
Excluded matters	제척사항	부속서 6, 7
Exempted contract	면제대상 계약	부속서 2
Financial threshold	조달기준금액	제52조 등
Framework (Agreement)	기본협약	제45조
- Open Framework	개방형 기본협약	제49조

Implied terms	묵시적 조건	제48조 등
Intermediate assessment of tenders	입찰서에 대한 중간평가	제20조
Key performance indicator(KPI)	핵심 성과지표	제52조
Lots	분할 구역	제18조
Minister of the Crown	왕실 장관	제123조 등
Modification	(계약의) 변경	제74조
- Qualifying modification	적격 변경	제77조
National Procurement Policy Statement(NPPS)	「국가조달정책 성명서」	제13조
- Wales procurement policy statement	「웨일스 조달정책 성명서」	제14조
Northern Ireland department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부처	제59조 등
Notice	공고 또는 통지	제15, 17조 등
Overriding public interest	최우선적인 공익	제41조
Paragraph	(각 부속서의) 항	각 부속서
Planned procurement notice	조달계획공고	제15조
- Qualifying planned procurement notice	적격 조달계획공고	제15조
Preliminary market engagement	사전시장 참여	제16조
Procurement arrangement	조달결합체계	제114조
- Devolved Scottish procurement arrangements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조달결합체계	제114조 등
- Devolved Welsh procurement arrangement	웨일스 자치정부 조달결합체계	제114조 등
- reserved procurement arrangement	유보된 조달결합체계	제114조 등
- transferred Northern Ireland procurement arrangement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조달결합체계	제114조 등
Professional misconduct	직무상 위반행위	부속서 7 제1항
Private utility	민간공익사업자	제2조
Proximity	근접성	제9조
Public authority	공공기관	제2조
Public service mutual	공공서비스 상호조합	제33조
- Qualifying public service mutuals	적격 공공서비스 상호조합	제33조
Public undertaking	공기업	제2조
Regulation	규 정	제122조
Reserved matters	유보사항	제2조 등
Schedule	부속서	각 부속서
Scheme of frameworks	연속적 기본협약체계	제49조
Secretary of State	국무장관	부속서 10
Senedd	웨일스 의회	제14조
Special regime contracts	특별제도 계약	제10조
Standstill period	정지기간	제51조 등
- mandatory standstill period	의무적 정지기간	제51조
- voluntary standstill period	자발적 정지기간	제51조
Statutory instrument	위임입법	제122조
Supported/Sheltered Employment Providers	지원고용 제공기관	제32조
Sub-contract(or)	하도급(자)	제72조
Technical specifications	기술사양	제56조
Tender notice	입찰공고	제21조
Threshold amounts	기준금액	부속서 1
Termination	종료(문맥에 따라 해지)	제55조/제80조
Transferred Northern Ireland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제13조 등

Transferred Northern Ireland authority	북아일랜드 자치기관	제13조 등
Treaty state	조약국	제90조 등
Utilities contract	공익사업 계약	제6조
Utility	공익사업자	제2조 등
Valuation of contracts	계약 가액 평가	제4조
Value for money	비용 대비 가치	제12조
Vertical arrangements	수직적 결합관계	부속서 2
Welsh Ministers	웨일스 자치정부 장관	제14조 등
Works	공사	부속서 1 등

□ 번역 참고사항

- 이 법은 2026.4.9.일자(원문 인쇄일)에 해당하는 버전을 기초로 번역하였음. 영국에서는 다른 법 또는 하위 행정입법(Regulation)에 의한 의회 제정법 개정을 수시로 허용하고 있어 2023년 최초 제정 이후 위 일자까지 개정된 내용이 원문에 추가되었음
(이 번역본에서 개정 내용은 법 본문 및 부속서에서 청색 이탤릭체로 표기함)
- 이 번역 및 각주에 있어 일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음. 다만, 법문의 문맥에 부합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고, 지식·경험 등에 비추어 부정확한 내용이 있어 번역자 책임하에 최종 번역한 것임(특히, 용어 번역)
- 가급적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바람직하나, 일부 우리 말로 번역하는 경우 의미 전달이 어려워 미세하게 의역을 하였으며, 우리 법 기술방식도 활용하였음
- 「2023 조달법」의 주요 조문 및 용어에 대한 가이드는 내각사무처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procurement-act-2023-guidance-documents>

「2023 조달법」 조문 차례

제 1 편 주요 정의	1
제1조 조달 및 적용 대상 조달	1
제2조 계약기관	2
제3조 공공계약	6
제4조 계약의 가액 평가	7
제5조 혼합조달 : 기준금액 이상 및 미만	7
제6조 공익사업 계약	8
제7조 국방 및 안보 계약	10
제8조 양허계약	13
제9조 라이트 터치 계약	14
제10조 혼합조달 : 특별제도 계약	16
제 2 편 원칙 및 목표	18
제11조 이 법에 의해서만 적용되는 조달	18
제12조 적용대상 조달 : 목표	18
제13조 「국가조달정책 성명서」	19
제14조 「웨일스 조달 정책성명서」	21
제 3 편 공공계약의 낙찰 및 절차	22
제1장 예비 단계	22
제15조 조달계획공고	22
제16조 사전 시장 참여	23
제17조 사전 시장 참여 공고	24
제18조 분할 구역 발주 고려 의무	24
제2장 경쟁 절차에 의한 낙찰	25
조달의 조건	25

제19조 경쟁 입찰절차에 따른 공공계약 낙찰	25
제20조 경쟁 입찰 절차	28
제21조 입찰공고 및 관련 입찰서류	30
제22조 참가 조건	31
제23조 낙찰 기준	33
제24조 낙찰 기준의 구체화	34
제25조 하도급 사양	35
배제 및 변경	35
제26조 경쟁 입찰절차에 따른 낙찰에서 공급자 배제	36
제27조 경쟁적 유연 절차에서 공급자 배제	36
제28조 하도급자를 기준으로 한 공급자 배제	37
제29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공급자 배제	38
제30조 부적절한 행위에 따른 공급자 배제	39
제31조 제19조 조달의 변경	41
특정 공급자에 대한 계약 유보	43
제32조 지원고용 제공기관에 대한 계약 유보	43
제33조 공공서비스 상호조합에 대한 계약 유보	43
역동적 시장에 의한 계약의 낙찰	45
제34조 역동적 시장에 따른 경쟁절차에 의한 낙찰	45
제35조 역동적 시장 : 개설	47
제36조 역동적 시장: 구성원 자격	48
제37조 역동적 시장: 시장에서 구성원 탈퇴	50
제38조 역동적 시장 : 수수료	51
제39조 역동적 시장 공고	51
제40조 적격 공익사업 역동적 시장 공고 : 입찰공고 게시 의무 면제	52
제3장 수의계약	54
제41조 특수한 경우의 수의계약	54

제42조 생명 보호 등을 위한 수의계약	55
제43조 수의계약으로 전환	56
제44조 투명성 공고	57
제4장 기본협약에 따른 낙찰	58
제45조 기본협약	58
제46조 기본협약 : 경쟁적 선정 과정	60
제47조 기본협약 : 최대 기간	61
제48조 기본협약 : 묵시적 조건	62
제49조 개방형 기본협약	63
제5장 낙찰 후 정지기간 및 공고	66
제50조 계약 낙찰공고 및 평가요약서	66
제51조 계약의 낙찰에 대한 정지기간	67
제52조 핵심 성과지표	68
제53조 계약 세부내역 공고 및 계약서 공개	69
제6장 낙찰 및 절차에 관한 일반조항	70
기한 및 종료	70
제54조 기한	70
제55조 조달 종료 공고	72
기술 사양	73
제56조 기술 사양	73
공급자 배제	74
제57조 배제되는 또는 배제 가능한 공급자의 의미	75
제58조 배제되는 또는 배제 가능한 공급자 인지 여부 판단	76
입찰참가자격 제한	77
제59조 공급자 배제 통보	77
제60조 공급자 조사 : 배제 사유	79
제61조 제60조에 따른 조사 : 보고서	81

제62조 입찰참가자격 제한명부	82
제63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잠정 구제신청	85
제64조 입찰참가자격 제한명부 : 삭제 신청	87
제65조 입찰참가자격제한 결정 : 항소	87
제66조 입찰참가자격제한 절차 및 비공개 자료 심리절차	89
제 4 편 공공계약 관리	90
공공 계약에 내포된 묵시적 조건	90
제67조 전자청구서 : 묵시적 조건	90
제68조 공공계약에서 묵시적 지급조건	91
지급 및 이행에 관한 공고	93
제69조 대금 지급 준수 공고	93
제70조 공공계약의 대금 지급에 관한 정보	94
제71조 계약이행평가	96
하도급	97
제72조 하도급 : 방향	97
제73조 하도급에서 묵시적 지급조건	98
공공계약의 변경	99
제74조 공공계약의 변경	99
제75조 계약 변경 공고	101
제76조 계약 변경에 대한 자발적 정지기간	102
제77조 계약 변경의 게시	102
공공계약의 해지	103
제78조 공공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묵시적 권리	103
제79조 공공계약의 해지 : 국가 안보	106
제80조 계약 종료 공고	106
제 5 편 이해 충돌	107
제81조 이해 충돌 : 식별 의무	108

제82조 이해 충돌 : 완화 의무	109
제83조 이해 충돌 평가	110
제 5A 편 외주 : 근로자 보호	112
제83A조 이 편의 적용	112
제83B조 관련 외주 계약	114
제83C조 관련 외주 계약에 포함될 조항을 정할 권한	116
제83D조 관련 외주 계약에 관한 행동 강령	117
제83E조 이 편의 해석	118
제83F조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장관의 이 편 개정 권한	118
제 6 편 기준금액 미만 계약	119
제84조 규율대상 기준금액 미만 계약	119
제85조 규율대상 기준금액 미만 계약 : 절차	119
제86조 규율대상 기준금액 미만 계약 : 중소기업을 고려해야 할 의무	120
제87조 규율대상 기준금액 미만 계약 : 공고	121
제88조 규율대상 기준금액 미만 계약 : 묵시적 지급조건	122
제 7 편 국제적 의무 이행	124
제89조 : 조약국 공급자	124
제90조 : 조약국 공급자 : 차별 금지	125
제91조 : 조약국 공급자 : 스코틀랜드에서의 차별 금지	126
제92조 무역 분쟁	126
제 8 편 정보 및 공고 : 일반 조항	127
제93조 파이프라인 공고	127
제94조 정보 공개 또는 공개 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면제 사항	128
제95조 공고, 문서 및 정보 : 규정 및 온라인 시스템	129
제96조 전자적 소통	130
제97조 조달에 관한 정보	131
제98조 기록 보관	131

제99조 개인정보 보호	132
제 9 편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133
제100조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 가능한 이 법에 따른 의무	133
제101조 계약 체결 또는 변경의 자동 정지	135
제102조 잠정 구제 수단	135
제103조 계약 체결 전 구제 수단	136
제104조 계약 체결 후 구제 수단	137
제105조 계약 체결 후 구제 수단 : 취소 요건	138
제106조 소송 제기 기한	139
제107조 제9편 소송절차 및 비공개 자료 심리 절차	140
제 10 편 조달 감독	141
제108조 조달 조사	141
제109조 조달 조사에 따른 권고	142
제110조 조달 조사에 따른 지침	144
제 11 편 소관기관 및 국경 간 조달	144
제111조 웨일스 자치정부 장관 :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	144
제112조 북아일랜드 부처 :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	145
제113조 왕실 장관 :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	147
제114조 조달결합체계에 대한 정의	148
제115조 조달결합체계에 대한 권한	150
제115A조 스코틀랜드 자치기관이 유보된 조달결합체계 등에 따라 조달을 수행하는 경우의 이 법의 적용	152
제 12 편 개정 및 폐지	153
제116조 「1988 지방정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의 적용 제외	153
제117조 단일 공급원 국방 계약	155
제118조 경합 권한 및 「2006 웨일스 정부법」	155
제119조 폐지 등	155

제 13 편 일반 규정	156
제120조 잉글랜드 NHS의 조달과 관련한 이 법의 적용 제외 권한	156
제120A조 웨일스 NHS 조달과 관련한 이 법의 적용 제외 권한	156
제121조 민간공익사업자와 관련한 이 법의 개정 권한	157
제122조 규정	157
제123조 해석	164
제124조 정의된 표현의 색인	167
제125조 결과적 조치 등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	169
제126조 적용 범위	169
제127조 시행	169
제128조 약칭	170

〔부 속 서〕

부속서 1 (제3조 관련) 기준금액	171
부속서 2 (제3조 관련) 면제대상 계약	174
제 1 편 계약상대방 기준 면제대상 계약	174
제 2 편 계약목적물 기준 면제대상 계약	178
부속서 3 (제4조 관련) 계약의 가치 추정	187
부속서 4 (제6조 관련) 공익사업 활동	190
제 1 편 공익사업 활동에 해당하는 활동	190
제 2 편 공익사업 활동이 아닌 활동	194
부속서 5 (제41조 관련) 수의계약 정당화 사유	195
부속서 6 (제57조 관련) 의무적 배제 사유	201
제 1 편 범 죄	201

제 2 편 그 밖의 의무적 배제 사유	205
제 3 편 일반 사항	211
부속서 7 (제57조 관련) 재량적 배제 사유	215
부속서 8 (제74조 관련) 허용되는 계약 변경	224
부속서 9 (제89조 관련) 조약국 공급자(특정 국제협정)	228
부속서 9A(제115A조 관련) 스코틀랜드 자치기관에 의한 조달	232
부속서 10 (제117조 관련) 단일 공급원 국방계약	235
부속서 11 (제119조 관련) 폐지 및 실효	244